

다문화 관련 법령 및 정책

곽연희

이주민과 관계된 다양한 법령들

-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외에도 이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 국제결혼과 관련된 <결혼중개업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국적 취득이나 귀화와 관련된 <국적법>,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다.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징

-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결혼이주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 초기 정책은 이주 당사자의 한국 문화 적응과 권리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이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복지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의 시작

-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1980년대, 하지만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마련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이주민들이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존재감을 갖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 2006년부터 '다문화 정책', 혹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연 도	연도별 외국인관련 정책 추진경과(2006~2010)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2006.4.; 12개 부처·2개 위원회 공동)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2006.5;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업무 관련 「업무추진지침」 시행 (2006. 8;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7. 5.17 제정, 2007. 7.18 시행)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2008.11;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발표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2008-2009)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2009. 12.17) -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안)] 발표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무총리 훈령 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수립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확정(2011. 3.11)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 범 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 국비지원 센터 : ('06) 21개소 → ('07) 38개소 → ('08) 80개소 → ('09) 100개소 → ('10) 159개소 → ('11) 200개소 → ('12) 200개소 → ('13) 211개소 → ('14) 212개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08.3.21) →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국무총리실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09.9.28)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 조정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10.5월)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10.7.1) → 실무위원장 변경(국무총리실장 → 여성 가족부 장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11.4월 개정, 10월 시행)
-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 8937호로 제정되어 시행됨
- **다문화 가족 : 결혼 이민자와 출생시부터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이주자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의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주자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 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제 6조)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1) 다문화 가족 지원법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 8조)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제 11조) 등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
- 한계점
 -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주민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함
 -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점 제시하지 못함**
 - 지원서비스 내용이 현행제도를 벗어나지 못함
- 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 이 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다문화가족지원법 >

- 현재 다문화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다문화가족 지원법 " 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 안전 장치를 말한다.
-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다문화가족들이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복지서비스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 가족이 살아가는 생애(family life cycle)를 단계별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하나의 주기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지원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상황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2)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법 제 5조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등 해당자는 의료 급여법이 정한 의료 급여혜택의 수급권자가 됨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3) 한 부모 가족 지원법

- 한 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 5조 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조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가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각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방향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정책대상 : 외국인
- 정책방향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예술교육과, 국립국어원 등
- 정책대상 : 외국인, 일반국민
- 정책방향 : 문화소외방지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한국어 교재 개발

→ 대부분의 정책이 연 1회의 일회성 이벤트 형식

→ 다문화 프로그램이 내국인 관점에서 기획

→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모두의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적인 문화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각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방향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정책대상 :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 정책방향 :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촌사회과
- 정책대상 : 결혼이민자
- 정책방향 : 영농교육, 방문교육 도우미 제도, 생활지원교육 실시

→ 이주여성의 농어촌 지역 정착에 대다수 정책이 집중

→ 농어촌 지역의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하여 다른 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으로의 확대가 요구됨

각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방향

• 법무부

- 담당부서 : 외국인정책과, 이민통합과
- 정책대상 : 외국인
- 정책방향 : 외국인 정책의 총괄

외국인정책과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를 조정
-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의 사무처리
-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이민통합과

- 재한 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 결혼이민자의 영주와 거주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

각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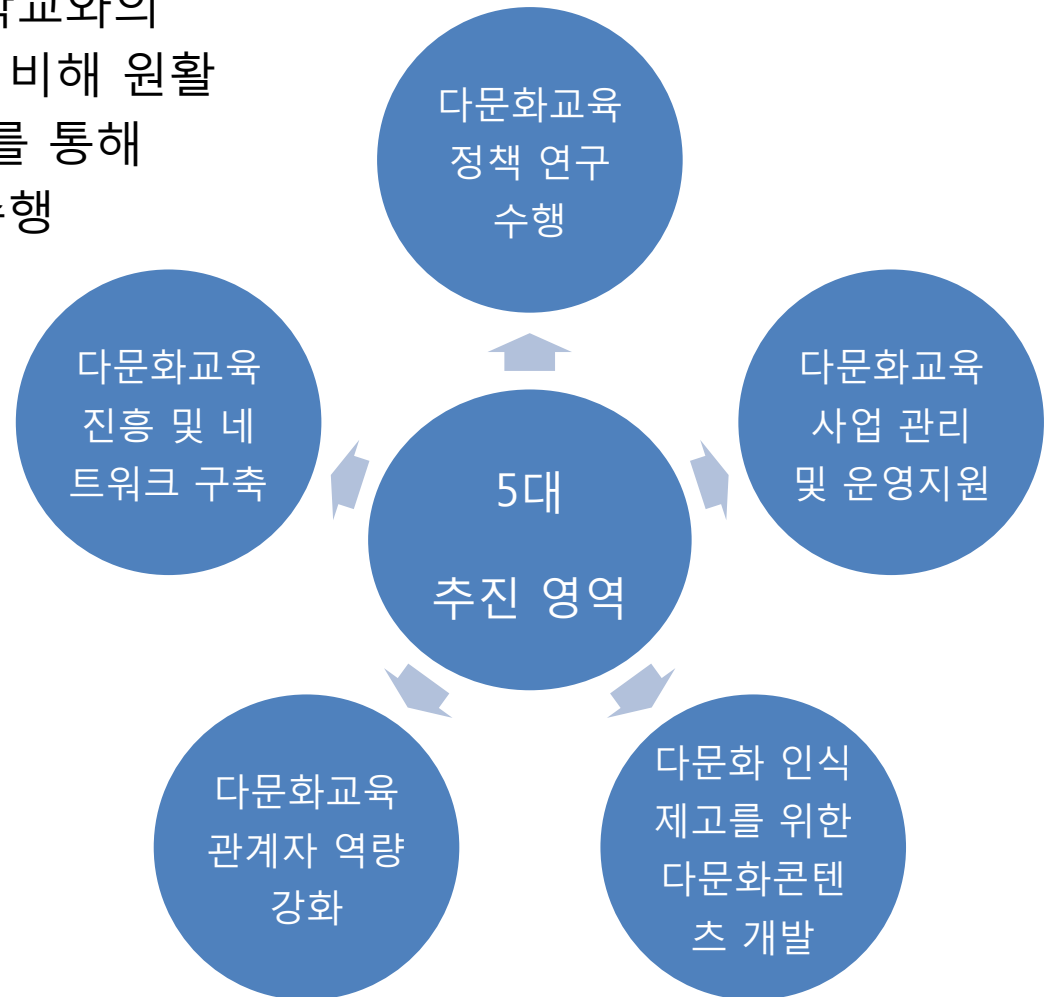
• 교육부

- 담당부서 : 학생복지정책과
 - 정책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일반학생
 - 정책방향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교육 지원
 - **5대 추진 영역**
 -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수행
 - 다문화교육사업 관리 및 운영 지원
 -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콘텐츠 개발
 - 다문화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진흥 및 네트워크 구축
- 일반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
- 정책 대상이 취학 후 아동과 부모로 한정되어 한국어 교육에 실효성 부족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낙인효과의 우려가 있음

각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방향

• 교육부

-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와의 연계체계가 다른 부서에 비해 원활
- 다문화교육센터의 설치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인 정책 수행



지역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개념도



각 부처별 다문화 정책 방향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복지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정책대상 : 다문화가족, 다문화청소년, 폭력피해이주여성
- 정책방향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The graphic features a central wavy line in various colors (blue, purple, orange, yellow, green, teal) representing the 13 languages. Each language name is placed in a white bubble around the line. At the top left is the Danuri logo (three stylized figures) and the text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with the tagline '다문화가족에게 행복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At the bottom left is the 'Danuri Call Center 1577 - 1366' box. At the bottom center is the Danuri logo and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2012 BY KHF ALL RIGHT RESERVED.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는 13개언어로 제공됩니다.'

1. 출생 당시 부모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① 맞다

② 틀리다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맞다

② 틀리다

3. 대한민국의 부에 의하여 인지된 성년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① 맞다

② 틀리다





4.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A씨의 경우 일반귀화 대상자가 된다.

① 맞다

② 틀리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공지사항

- 사회통합프로그램 제5차 중간평가 결과 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운영" 알림 
- 제2015년 제5차 사전평가 시험장소 및 수. 
- 사회통합정보망 서비스 일시중단 알림 





[MORE >](#)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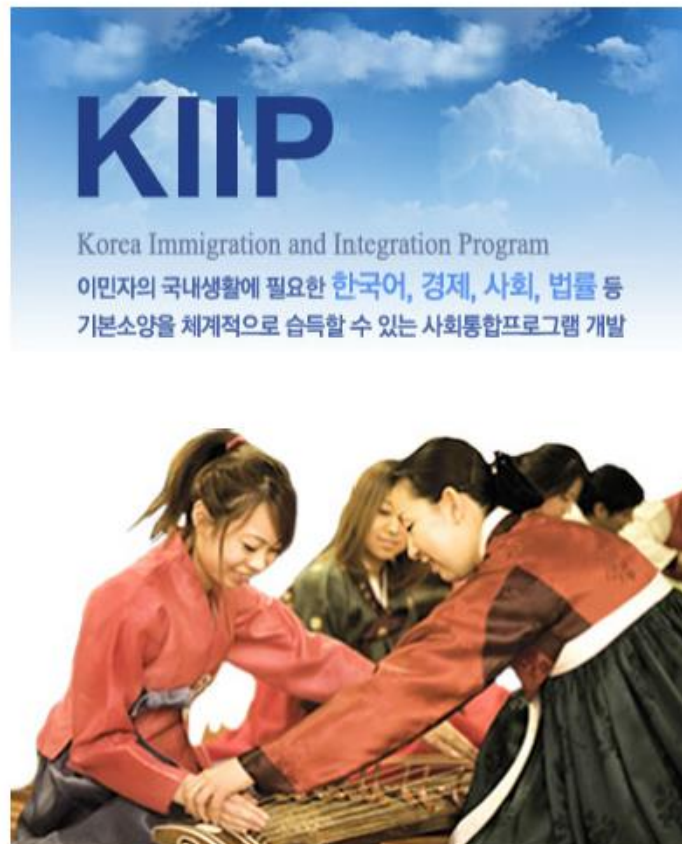
- 방문취업(H-2) 동포 조기적응지원센터 약도 
- 작문형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 중간평가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보나. 
- 종합평가는 언제 보며 어떻게 출제되나요? 

[MORE >](#)


Q&A

- 시험취소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 사전평가 시험 취소 
- 사전평가 문의??? 

[MORE >](#)



MEMBER LOGIN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D

Password

QUICK MENU

 신청절차	 과정신청	 지정기준
 자료실	 기본소양평가	 미디어학습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무료한글교육사이트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 이수혜택

- (1) 국적필기시험면제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 (2)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 (3)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 자격변경 시 가점 부여 등(최대 25점)
- (4) 일반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5)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6)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활동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 (7)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 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 과정 및 이수시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					한국사회의 이해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이수시간	15시간	100	100	100	100	50
사전평가	구술 3점 미만 (지필점수 무관)	3~20점	21~40점	41~60점	61~80점	81~100점

5) 단계별 진행

...

- (8) 한국어 각 과정 진행 : 과정 종료시 단계평가
- (9) 중간평가
- (10) 한국사회이해과정 진행
- (11) 국적 체류상담
- (12) 종합평가(KIANT)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1) 도입취지

-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 사증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 이수 대상자

- 우리 국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3) 면제대상자

- (1)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3)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프로그램 운영 과정(3시간)

- (1)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정보 등 소개
- (2)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3)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3.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구 해피스타트)

1) 도입배경

- (1)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국내에 입국하는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2) 초기정착 과정에서 국내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조화 및 이질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주요내용

- (1) 이수대상 :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 (2) 신청시기 : 국제결혼으로 국내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3개월) 이전
- (3) 내용
 - ① 체류, 국적 등 출입국관련 업무
 - ② 기초생활정보 및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등 안내
 - ③ 선배결혼이민자와 만남
- (4) 혜택 : 최소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부여

♣ 외국국적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4.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여성가족부

- 1) 기본방향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2단계 :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가족 위기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교육 지원

4.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여성가족부

- 1) 기본방향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4단계: 역량강화기
 - 다문화가족 경제, 사회적 자립지원
 - 전단계 : 다문화역량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5.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 여성가족부

- 1) 기본방향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같다.
- 2)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

3) 주요 사업(참고 자료)

- (1) 방문교육사업
- (2)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 센터프로그램

<방문교육사업>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자녀생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만 19세 미만, 1996.1.1. 이후 출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신생아기(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 관리, 학교-가정 생활 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만 3~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병원, 학교 등 기관 이용시 통·번역
-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 서비스 이용방법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이메일 신청

※ '15년 통번역 전담인력 282명 활동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만 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실시

-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센터내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에 파견해 건강한 성장지원

※ '15년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활동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다문화가족자녀(영·유아기)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부모-자녀 이중언어 상호작용 교육,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

3. 센터 프로그램

종류	사업영역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센터사업	기본사업	1. 가족 프로그램 가족 간의 소통 원활을 위한 부모-자녀, 부부 관계 증진 프로그램 :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 등
	2. 성평등 프로그램	가족 내 및 부부 간 성평등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배우자·부부교육, 배우자 이해프로그램, 예비·배우자교육 프로그램,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3. 인권 프로그램	인권의식 함양 및 임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구제 방법 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제도 교육, 이주민과 인권 교육 등
	4.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지식과 소양 함양 교육 :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워크넷,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및 활동,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멘토링 프로그램 등
	5. 상담 프로그램	가족 갈등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 가족상담, 개인·집단 상담, 사례관리, 외부 상담기관 연계
	6. 홍보 및 자원연계	지역사회 홍보, 다문화가족 대상 정보제공, 지역 내 종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3. 센터 프로그램

종류		사업영역	사업내용(목적, 대상, 내용 등)
센터사업	특성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언어발달 등 단계적 성장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지자체 사업	한국어교육운영 사업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4. 센터 이용 및 상담관련 문의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1366
- + 홈페이지 : <http://liveinkorea.kr>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인의 날
 -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대상의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국한되어 있음
- 대다수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국내 체류중인 등록외국인과 그 가족의 한국화를 돕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프로그램이 외국 이주민에게 한국어, 전통음식과 예절 등을 습득시키는 동화주의적 특성을 보임
- 각 부처 간의 협력이 거의 없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개선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단위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상호가 일관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및 적정예산 배정,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앙 및 중간 전달체계인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대한 법적·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